

의안번호	제634호
의결 연월일	2014년 4월 일 (제329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정헌의원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3월 25일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 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4
----------	-----

발의연월일 : 2014년 3월 25일

발 의 자 : 정 헌·황규철·권기수·김도경

유완백·윤성옥·이수완 의원 (7명)

1. 제안 이유

-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2조제2항)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하여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하여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p> <p>① <u>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p> <p>①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생략)</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범위) <u>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제5조(지원범위) <u>이 조례에 따라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6조 ~ 제11조(생략)</p>	<p>제6조 ~ 제11조(생략)</p>
<p>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생략)</p> <p>(신설)</p>	<p>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u></p>

현행	개정안
<p>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u></p> <p>③----- ----- ----- ----- ----- -----.</p>

관 계 법 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